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년월일 2025. 2. .
제 출 자 김기남, 권민찬 의원

1. 개정이유

- 기존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자의 사망 후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지급하였으나, 생전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배우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문구 삭제 (안 제11조제1항)
-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분리하여 명시(안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신설(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 기타 띄어쓰기 수정 및 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국가보훈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협의를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2. . ~ 2025. 3. .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5. 1. . ~ 2025. 2. .

나) 협의결과 :

3)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체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우”를 “이 조례에 따른 예우”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두고 국가 보훈처에 등록된”을 “둔”으로, “수당 등’ 이라고 한다.)을 지급 할”을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참전명예수당 또는 참전유

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보훈의달”을 “보훈의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참전명예수당

② 제1항제2호의 참전명예수당은 80세부터 지급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제4호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위로금 :”을 “위로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망위로금 :”을 “사망위로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배우자수당 :”을 “배우자수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호 및 제4호”를 “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전일”을 “전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1조제4호의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포시 보훈복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p> <p>5. (생략)</p>	<p>제1조(목적) ----- 「국가보훈기본법」 ----- ----- ----- ----- -----.</p> <p>제3조(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p> <p>5. (현행과 같음)</p>

고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참전명예수당 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3. (생략)

4. 그 밖의 위로금(보훈의달, 명절, 보훈관련 국경일)

5. (생략)

② 제1항제2호 중 참전명예수당은 80세부터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신설>

<신설>

제12조(신청방법 및 시기) ① 제11조의 수당 등을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과 지급중지 후 재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해당 읍·

한다)을 지급할 -----.

1. (현행과 같음)

2. 참전명예수당

3. 참전유공자 -----
--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
--보훈의 달---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제1항제2호의 참전명예수당은 80세부터 지급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제4호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신청방법 및 시기) ① ---

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
로금 : 별지 제1호 서식

2.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 서
식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별
지 제4호 서식

② ~ ⑤ (생 략)

제13조(지급결정 및 지급) ① (생
략)

②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4
호의 수당 등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며 매월 25
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
하되,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제11조제3호의 사망위로금
은 지급신청일 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1. -----
----- 위
로금: -----

2. 사망위로금: -----
--

3. ----- 배우자수당: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지급결정 및 지급) ① (현
행과 같음)

② ----- 제2호, 제3호 및
제5호-----

----- 전날-----.

③ 제11조제4호의 사망위로금
은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
을 적용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8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8. 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17.>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자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신설 2015. 2. 3.>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3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8.>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

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 8. 4., 2015. 12. 22., 2023. 3. 4.>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8. 3. 28.]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개정 2008. 3. 28.>

제54조(법인격)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培養)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 8. 4., 2023. 3. 4.>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08. 3. 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고엽제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7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신설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2015. 12. 22.>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07. 12. 21.>

제9조(법인격)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② 고엽제전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 3. 4.>

③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참전유공자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2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09. 2. 6.>

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6·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6·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6·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 3. 4.>
 ④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22.>
 ② 월남전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월남전참전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 3. 4.>
 ④ 월남전참전자회의 조직, 임원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3까지,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6·25참전유공자회”는 “월남전참전자회”로 본다. <개정 2021. 6. 8.>
 ⑤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1. 1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4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 3. 4.>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령 제1호, 2023. 6. 5., 다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5.>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주소 및 약력을 적

- 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 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제4조(설립허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9., 2021. 4. 5., 2023. 6. 5.>

-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설립목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과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
 - 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바. 이 규칙에 따라 이미 허가된 비영리법인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삭제 <2019. 12. 20.>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6. 5.>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6.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제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제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

- 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전문개정 2011. 9.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독립유공자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송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향

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3. 28.]

5·18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5·18유공자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6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8.>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8. 3. 28.]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27.]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121호, 2024. 3. 27., 일부개정]

경기도 김포시(복지정책과), 031-980-279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포시 보훈복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이를 후손들이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8.4, 2017.6.30)
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예우 대상자) 예우 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5.9.30)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개정 2015.9.30, 2019.4.1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2015.9.30)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2015.9.30)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2015.9.30)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8.12.31>

제5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 ① 시장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

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 행사개최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6.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 격려
7.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
8.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훈 선양시설의 건립 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 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 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2. 공훈 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3. 도로·공원·광장·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그 밖에 시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보훈복지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
2.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
4.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5. 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
6.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 (개정 2013.11.1)
7.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 보훈대상자 우대
8.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9. 시가 관리하는 복지관련 성금액 중 일정비율을 보훈관련 복지에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제11조(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위로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위로금(이하 '수당 등' 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4.27>

1. 보훈명예수당
2. 참전명예수당 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3. 사망위로금
4. 그 밖의 위로금(보훈의달, 명절, 보훈관련 국경일)

5. 독립유공자명예수당<개정 2021.7.30.>

[전문개정 2017.6.30]

② 제1항제2호 중 참전명예수당은 80세부터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신설 2019.4.17>,<개정 2024.3.27.>

제12조(신청방법 및 시기)

① 제11조의 수당 등을 최초로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과 지급중지 후 재신청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6.30)

1.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 : 별지 제1호 서식<신설2016.12.30, 2017.6.30., 2021.7.30.>

2.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 서식<신설2016.12.30, 2017.6.30>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19.4.17>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 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4.8.4)

[2017.6.30 제13조에서 이동]

제13조(지급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7.6.30>

②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수당 등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0.12.30, 2017.6.30>

③ 제11조제3호의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일 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17.6.30>

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7.6.30 제14조에서 이동]<신설 2016.12.30>

제14조(수당 등의 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단한다.

[2017.6.30 제15조에서 이동]<개정 2017.6.30>

제1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의 주민등록사항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2017.6.30 제16조에서이동, 전문개정]

제16조(지급대장의 작성) 시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수당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대장은 전산파일로 대신할 수 있다.

[2017.6.30 전문개정]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7.6.30 제18조에서 이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7.6.30 제19조에서 이동]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대상자 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에 해당되어 보훈대상자 위로금을 신청한 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에 따른 보훈 명예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1.1 조례 제1095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12.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제6호 중 “기능직 등”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2014.8.4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30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30.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7.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2호, 2021.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유공자명예수당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명예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24.3.2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